연금설계와 세금문제

■ 연금과 과세문제

연금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세금문제이다. 일반적인 연금수령액에 대한 과세문제 뿐만 아니라 계약자나 피보험자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, 연금에 대한 과세문제도 미리 짚어둬야 한다.

■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사망시 세금 과세

계약자	피보험자	수익자	사망시점	사망자	세금과세
남편	부인	남편	연금개시 전	남편	남편의 상속재산에 포함*
				부인	-
			연금개시 후	남편	남편의 상속재산에 포함**
				부인	-
부인	남편	부인	연금개시 전	부인	부인의 상속재산에 포함*
				남편	-
			연금개시 후	부인	부인의 상속재산에 포함**
				남편	-

*해약환급금 및 사망위로금

**확정형: 잔여기간 동안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(6.5%로 할인)

종신형: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연수까지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(6.5%로 할인)

■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(관련 예규판례)

1. 질의내용 요약

✓ 사실관계

- 현재 저축성 연금보험상품 중 일시납(한번에 모든 보험료를 납부)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원리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이 있음

- 상기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확정보증기간(10년)은 있으나 별도의 만기일 없이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자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임

✓ 질문내용

- 자녀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,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

-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상당액은 일시납으로 납입한 보험료인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평가액인지를 질의함

[회신]

생명보험(종신연금)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며, 보험금 상당액은 종신연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, 최저지급보증기간이 기대여명연수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평가함

(서면4팀-3180(2007.11.5))

※ 참고자료

- 이영권 저,『100세 시대,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』